

2026년 개인소득세(PIT)

부양가족 등록 안내 가족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

2026 과세기간 적용

2025년 개인소득세법 및 시행 지침에 따름 - 2026년 7월 1일 시행

공제액은 인상되었지만,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습니다

2026 과세연도부터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공제액이 인상되었습니다.

그러나 부양가족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 납세자는 대상 요건 충족, 증빙서류 구비, 기한 준수 등 등록 절차를 마쳐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620만 동

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1인당 매월 공제 가능

12월 31일

해당 과세연도 내 최초 부양가족 등록 기한

새로운 가족공제 기준

이전 기준 (2025년까지)

본인: 월 1,100만 동

부양가족 1인당: 월 440만 동



2026 과세연도부터

본인: 월 1,550만 동 (연 1억 8,600만 동)

부양가족 1인당: 월 620만 동

중요 원칙: 각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연도 동안 단 한 명의 납세자에게만 공제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(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10조 제3항).

시행 시점: 새 기준은 국회상임위원회 결의 제110/2025/UBTVQH15호(2026.1.1. 시행)에 따라 2026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, 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10조(2026.7.1. 시행)로 법제화되었습니다 — 두 차례 인상이 아닙니다.

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?

자녀에는 친자녀, 법적 양자, 배우자의 전혼 자녀가 포함됩니다.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:

구분	요건	소득 요건
18세 미만	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됨	심사 대상 아님
18세 이상	민사행위능력 상실 / 장애 / 노동능력 없음	심사 대상 아님
재학 중 (18세 이상)	대학교, 전문대학, 전문학교, 직업훈련학교 재학 (18세 이상 고등학생 포함, 매년 6~9월 대입 결과 대기 기간 포함)	소득이 없거나 월평균소득 300만 동 이하 ※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

법적 근거: 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10조 제4항; 시행령 제253/2026/ND-CP호 제47조 제2항.

배우자, 부모, 기타 부양가족 및 요건

구분	해당자
배우자	납세자의 배우자
부모	친부모, 계부·계모, 법적 양부모, 배우자의 부모(장인·장모/시부모)
의탁할 곳 없는 기타 개인	동거 중인 형제자매, 조부모(친가·외가), 삼촌·이모·고모, 조카 등으로서 혼인가족법 제104~106조에 따라 납세자가 부양의무를 지는 자

공통 요건 (배우자, 부모, 기타 개인):

- 근로연령 내: 노동능력 상실과 월평균소득 300만 동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.
- 근로연령 초과: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소득이 300만 동 이하이면 됨.
- “노동능력 상실”이란 노동능력 감소율이 81%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제253/2026/ND-CP호 제47조 제2~4항; 시행규칙 제87/2026/TT-BTC호 제3조.

2 가지 등록 방법

방법 1 — 회사를 통한 등록

- 1 근로자가 인사/회계 담당자에게 증빙서류와 위임장(41/UQ-DKT 서식)을 제출합니다.
- 2 회사가 부양가족 정보를 20-DKT-TH 서식(개인은 05-DKT-TH 서식)에 종합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합니다.
- 3 세무당국이 부양가족에게 세금코드를 부여하고, 회사는 세무 조사에 대비해 서류를 보관합니다.

방법 2 — 개인이 세무당국에 직접 등록

- 1 개인이 20-DKT 신고서와 부양가족 확인 서류를 (전자시스템 또는 세무당국 창구를 통해) 제출합니다.
- 2 세무당국이 부양가족에게 세금코드를 부여합니다.

전자등록 시 베트남 국적 부양가족은 개인식별번호만 기재하면 되며, 세무당국이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정보를 조회합니다.

법적 근거: 시행규칙 제90/2026/TT-BTC호 제21조; 시행령 제252/2026/NĐ-CP호 제6조.

필요 서식 목록

서식 번호	용도	작성자
20-ĐKT	부양가족 정보 등록/변경	개인 직접
20-ĐKT-TH	부양가족 등록/변경 종합	소득지급 회사
05-ĐKT-TH	근로자 세무등록 종합	소득지급 회사
41/UQ-ĐKT	세무등록 위임장	근로자 서명
07/XN-NPT-TNCN	직접부양의무자 명세서	개인 (기타 부양가족)
08-MST	세무등록 정보 수정/보완	개인/회사

참고: 부양가족에게 부여된 세금코드는 이후 해당 개인에게 국가예산 관련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세금코드로도 사용됩니다.

체크리스트 증빙서류 (1/2)

부양가족	증빙서류 (사본)
친자녀	출생증명서(또는 친자확인결정서) + 자녀 신분증(발급된 경우)
양자	출생증명서 + 신분증(있는 경우) + 입양결정서/입양증명서
배우자의 전혼 자녀	출생증명서 + 신분증(있는 경우) + 혼인증명서(또는 관계 증빙서류)
18세 이상 장애/민사행위능력 상실 자녀	위 관계 서류 + 장애 확인서 또는 민사행위능력 상실 확인서
재학 중인 자녀 (18세 이상)	위 관계 서류 + 학생증/학교 확인서/재학 증빙서류

법적 근거: 시행규칙 제87/2026/TT-BTC호 제4조.

체크리스트: 증빙서류 (2/2)

부양가족	증빙서류 (사본)
배우자	신분증 + 혼인증명서(또는 배우자 관계 증빙서류)
친부모	부모의 신분증 + 납세자의 출생증명서(또는 친자확인결정서)
양부모 / 배우자의 부모 / 계부모	부모의 신분증 + 해당 관계 증빙서류(입양서류 / 출생증명서 + 혼인신고서)
의탁할 곳 없는 기타 개인	신분증 + 직접부양의무자 명세서(07/XN-NPT-TNCN 서식) + 관계 및 부양의무 증빙서류
노동능력이 없는 자	노동능력 감소율 81% 이상 증빙서류 추가 제출
외국인 부양가족	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법적 서류로, 요건 충족 및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

법적 근거: 시행규칙 제87/2026/TT-BTC호 제4조.

기한 및 주요 유의사항

늦어도 12월 31일까지

해당 과세연도 내 최초 부양가족 등록 기한 (시행령 제252/2026/ND-CP호 제6조)

- 1회 등록 원칙: 각 부양가족은 공제를 받는 전체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등록 및 증빙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.
- 새로운 부양가족이 생기면 추가 등록하고, 요건을 상실하면 공제 종료를 신고해야 합니다.
- 근무처 변경 시: 새로운 소득지급 회사에 부양가족 확인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제252/2026/ND-CP호 제6조; 시행규칙 제90/2026/TT-BTC호 제21조, 제23조.

문의하기

DEDICA의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들이 항상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연락하시면 전문 법률 자문 및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기업 및 투자
형사/범죄

상시 법률자문
인수합병(M&A)

분쟁 해결
상표 및 저작권



주소

11층, A&T 빌딩, 171 Hai Bà Trưng, Xuân Hòa
동, 호치민시



전화

+84 39 969 0012



이메일

david@dedica-law.com



웹사이트

www.dedica-law.com



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